

시험확인서

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11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(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에 대한 시험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합니다.

1. 시료내용

시료명	뉴슈퍼마	신청자	삼화페인트공업(주)
접수번호	AYAA17-55821	시료채취장소	삼화페인트공업(주)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178
시료채취 일시	2017.10.18	접수일자	2017.10.18
발행일자	2017.11.13	시료채취 방법	현장방문 채취
검사목적	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		
대상건축자재 [] 접착제, [V] 페인트, [] 실란트(sealant), [] 퍼티(putty), [] 벽지, [] 바닥재, [] 기타 ()			

2. 오염물질 방출 시험 결과

가. 검사결과 종합

판정	적합
기준 초과항목	-

나. 항목별 검사결과

검사항목	기준	시험 결과
폼알데하이드	0.02 이하	0.000 mg/m ² ·h
톨루엔	0.08 이하	0.000 mg/m ² ·h
총휘발성유기화합물	2.5 이하	0.000 mg/m ² ·h

한국에스지에스(주)

